

# 방송교육사업분야 산학협력을 위한 협정서

## 제 1 조(목적)

(재)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(이하 “갑”이라고 한다)과 대구대학교(이하 “을”이라고 한다)는 방송영상산업분야 인적자원의 개발과 방송영상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.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전략적 제휴를 통해 방송인적자원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 제 2 조(협력의 내용)

1.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을 통해서 상호학점교류인정, 방송예비인력교육 등 방송인적자원개발 및 방송영상교육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.
2. “갑”과 “을”은 우수 방송교수요원의 개발과 육성, 방송교육 강사풀의 운영, 방송교육자료의 개발, 교육정보의 상호교류 등 방송교육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.
3. “갑”과 “을”은 방송교육관련 영상물 제작, 운용 S/W 개발, 연구개발, 연수교육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분야의 경험을 교환한다.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측의 전문가를 공동으로 참여시켜 협력팀을 구성할 수 있다.
4. “갑”과 “을”은 각 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방송 관련 행사에 공동 참여하며 공동사업을 기획, 운영할 수 있다.

## 제 3 조(협정기간)

이 협정은 협정 체결일로 부터 2년 간 유효하며 협정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에 의해 서면해지 통고가 없는 한 매 2년간씩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며, 이 협정의 수정 및 보충은 서면에 의한다.

## 제 4 조(보충협의)

이 협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과 정해진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항은 쌍방 간의 협의 후 계약서로서 정한다.

이 협정의 성립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8년 9월 19일



총 장 이 용 두

이 용 두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



원 장 권 영 후

권 영 후

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-1